

제 목

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

판결 요지서

□ 사건의 경과

사 건 번 호	2003가합70565
원 고	원고 ○○○ 등
피 고	인천국제공항공사, 대한민국
소 제기일	2003. 9. 26.
판결 선고일	2006. 5. 9.
쟁 점	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여 원고 등의 거주지에 도달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
결과 (주문)	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승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고 패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일부 승소
참 고 조 문	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1. 원고들은 인천국제공항 북쪽 장봉도, 모도의 주민들이고, 피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관리, 운영하는 법인이다.
2.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

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한 후 8년 4개월의 공사 끝에 2001. 3. 29. 개항하였다.

○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

1. 원고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.
2. 이 사건의 쟁점은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이다.

○ 법원의 판단

소음의 수인한도 초과여부 :

- ① 감정인의 소음피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가 85WECPNL이하이고,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가 80WECPNL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, ② 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및 여객 수송은 우리나라의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,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,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, ③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항공기가 원고들의 거주지역을 완전 회피하여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, 피고들이 선회지점의 일부 폐쇄, 이륙시 소음감소절차 시행, 항공기 선회각도의 변경 등 원고들의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점, ④ 이 사건 소제가 이전에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주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설치하지 못한 점, 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한 영종도 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고들의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 및 생활기반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지고,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원고들이 공항의 건설로 인한 수혜를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고 보이는 점, ⑥ 제3활주

로가 완공되면 원고들 거주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인천국제공항에 이·착륙하는 비행기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

□ 판결의 의미

- 기종의 김포공항 사건이나 군산비행장 사건과 유사하게 수인한도 결정의 요소로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, ② 원고들이 입은 피해 (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,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), ③ 관련 법규에서 정한 소음의 기준, ④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,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, ⑥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,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.